



## 영국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법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 I. 입법 이유

영국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법'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이하 '기후변화법' 이라 한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법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방출의 감축과 연료 빈곤(fuel poverty)의 경감, 자가 열·전력 생산(microgeneration)의 증진 그리고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열의 사용, 온실가스의 방출과 연료·전기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의 준수, 전기의 공급·생산과 관련된 의무와 송전 비용의 조절 등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법은 하원 의원 Mark Lazarowicz에 의해 법안으로 제출되어, 2005년 6월 22일 처음 하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하원과 상원에서 차례로 통과되고 여왕의 승인을 거쳐, 2006년 6월 21일자로 그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각 조항들은 순차적으로 효력을 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에는 정부의 향후 명령에 따라 효력이 발하도록 되어 있는 제15조에서 제17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이 효력을 발하고 있다(제28조).

### II. 주요 내용

'기후변화법'은 총 29조로 이루어진 본 법과 1개의 계획(Schedule)으로 되어 있으며, 법의 목적, 온실가스 방출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자가 열·전력 생산, 에너지 효율성, 연료·전기 사용과 방출에 관한 건물 규정, 탄소방출 감축 목표, 동력수요기술, 공동체 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열,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전력, 기타 규정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조항들 중에는 이 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들처럼 이 법에서 새롭게 규정되게 된 조항들도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법' (Sustainable Energy Act 2003), '전기법' (Electricity Act 1989), '건축법' (Buildings Act 1984), '도농계획법'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주택법' (Housing Act 2004), '치안법원법' (Magistrates' Court Act 1980), '가스법' (Gas Act 1986), '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1972), '공공사업법' (Utilities Act 2000) 등의 기존의 에너지 관련 법안들의 일부 조항을 '기후변화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한 조항들도 있다. 아래에서는 '기후변화법'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차례로 개관해 보도록 하겠다.

### 1. '기후변화법'의 목적

'기후변화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의 기여를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자와 관련기구들(정부와 공공기관<sup>1)</sup>)은 이 법의 목적과 연료·빈곤 문제의 완화, 다양하고 실행 가능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의 보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제1조).

###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기후변화법'은 온실가스의 배출과 관한 정부의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회에 이전 년도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와 이전 년도에 기록된 온실가스<sup>2)</sup>의 배출 수준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관련하여, 정부(the Secretary of State)는 이 조항의 효력발생일(2006년 8월 21일)로부터 1년 안에, '에너지 대책 보고서'(energy measures reports)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때때로 개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이 에너지 대책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대책에 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로서, 에너지사용에 있어서의 효율성 향상, 자가 열·전력 생산이나 기타 방출량이 적은 자원·기술에 완전히 또는 주로 의존하여 생산되는 전기·열 생산량의 증진,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연료 빈곤에서 살아가는 가정 수의 감축 등

을 그 내용으로 한다(제3조 제3항).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최근에 개정된 에너지 대책 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제3조 제2항).

### 3. 자가 열·전력 생산

'기후변화법'이 대안적 에너지 정책으로 특별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가 열·전력 생산'(microgeneration)이다. 자가 열·전력 생산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총 8개조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 자가 열·전력 생산이란 바이오매스(biomass), 생물연료(biofuels), 연료 전지(fuel cells), 태양광발전기(photovoltaics), 물(조력도 포함), 바람, 태양열, 지열(geothermal) 자원, 열병합발전시스템(Combined heat and power systems) 등에 주로 또는 완전히 의존하여 열이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그 생산능력이 전력은 50kw, 열은 45kw를 넘지 않은 설비에서 전력이나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제26조 제1-3항, Energy Act 2004, 제82조)<sup>3)</sup>.

정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국가 자가 열·전력 생산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관한 사실이 담겨 있는 보고서를 공표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4조 제1항, 제5항). 여기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설치된 자가

\*\*\* -----

1) 여기서 '공공기관'(public authorities)란 법원이나 재판소(tribunal) 그리고 공적 특성을 가진 기능을 수행하지만 의회나 의회절차와 연결될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 사람을 포함한다(제26조 제1항, Human Rights Act 1998 제6조).

2) 여기서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플루오로화수소탄소(hydrofluorocarbons), 과불화탄소(perfluorocarbons), 헥사플루오린화황(sulphur hexafluoride) 등을 말한다(제26조 제1항, Energy Act 2004, 제82조).

3) 따라서 'microgeneration'의 번역 관례인 '자가전력'은 전력의 생산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으며, '자가 열·전력 생산'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열·전력 생산 시스템의 숫자와 스코트랜드에 설치된 자가 발전 시스템의 숫자에 관한 목표와 목표를 달성할 날짜를 정해야 한다(제4조 제3항). 필요한 경우에는 목표 날짜 이전에 목표를 재검토하여 수정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제4조 제7항, 제8항). 하지만 만약 정부가 2008년 11월 1일까지 그러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면, 목표를 정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제4조 제2항, 제6항).

이외에도 '기후변화법'은 기존의 법률에서 자가 열·전력 생산과 관련된 조항들을 수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먼저 '지속가능한 에너지 법'(Sustainable Energy Act 2003)의 연간 보고서에 관련된 규정이 수정된다(제5조, 제6조). 이에 따라, 그 연간보고서에는 자가 열·전력 생산 목표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전기법'(Electricity Act 1989)에 따르면 '가스 및 전기 시장 감독기구'(the Gas and Electricity Markets Authority)의 기관장은 전기의 생산, 전달, 공급에 관한 행위를 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에 자가 발전이나 그 송전과 공급에 관한 행위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개정하였다(제9조). 또한 정부는 잉글랜드에서의 '도농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에 따른 '개발명령'(development order)의 효과를 검토하여 의회에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명령이 자가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하도록 수정하였다(제10조). 마지막으로 '건축법'(Buildings Act 1984)을 개정하여 건축규제에 자가 열·전력 생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제11조).

이외에도 정부는 영국에서 자가 전력 생산 방법으로 생산된 전력의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전력 분배의 허가 및 전기 공급의 허가에 관한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제7조), 그러한 조건을 수정하기 전에 정부는 수정된 면허의 소지자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 4. 에너지 효율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법'(Sustainable Energy Act 2003) 제1조는 정부가 매년 영국에서의 탄소배출량의 감축과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 유지,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 증진, 연료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 숫자의 감소 등에 관한 진행사항을 담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고서'(sustainable energy report)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후변화법'은 이 보고서의 내용에 잉글랜드의 주거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목표 달성과 잉글랜드의 이산화탄소배출, 연료 빈곤(fuel poverty)<sup>4)</sup>으로 살아가는 세대의 숫자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제12조).

#### 5. 연료와 전력의 사용과 배출에 관한 건축 규제

'기후변화법'은 '건축법'(Buildings Act 1984)을 개정하여, 연료와 전력의 사용과 배출에 관한 건축 규제를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 - '치안법원법'(Magistrates' Courts Act 1980)의 제1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4) '연료 빈곤'(fuel poverty)이란 소득이 충분치 않아, 집의 난방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기후변화법' 제26조 제1항, '따뜻한 주거와 에너지 보존에 관한 법'(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 제1조).

하고 - 그 위반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사건이 치안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법'의 제14조 효력발생일(2006년 8월 21일)로부터 6개월 내에, 건축 규제의 관련 조항들이 더욱 더 잘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미 행한 조치들과 조치들의 제안이 담겨 있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 때때로 수정된 보고서 제출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 6. 탄소 배출 감축 목표

'가스법' (Gas Act 1986) 제33BC조는 소비자의 효율적 가스 사용의 증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후변화법'에서는 이 조항의 '에너지 효율성 목표'를 '탄소 배출 감축 목표'로, '에너지 효율성 의무'를 '탄소 배출 감축 의무'로 각각 개정하고, 자가 열·전력 생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도록 했다(제15조). 또한 '전기법' (Electricity Act 1989) 제41A조는 소비자의 효율적 전기 사용의 증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조항의 '에너지 효율성 목표'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로, '에너지 효율성 의무'는 '탄소 배출 감축 의무'로 각각 개정하도록 하고, 자가 열·전력 생산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제16조).

## 7. 동력수요기술

정부는 '기후변화법' 제19조의 효력발생일(2006년 8월 21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영국에서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하여, '동력수요기술' (dynamic

demand technology)<sup>5)</sup>의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제18조 제1항). 이 보고서는 그러한 기술의 사용을 증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가, 만약 적절하다면 그러한 조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포함해야 한다(제18조 제2항).

## 8. 공동체 에너지 기획

정부는 '공동체 에너지 기획' (community energy projects)을 증진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19조 제1항). 여기서 '공동체 에너지 기획'이란 공동체의 목적을 위한 관련된 설비의 사용, 그러한 설비의 설치, 그러한 설비의 적용 등을 뜻한다. '공동체의 목적'은 비상업적 목적이고, 다수 주거 시설인 건물에서의 소비를 위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제19조 제3항). 공동체 에너지 기획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공동체 에너지 기획의 증진을 목적이나 효과로 삼고 있는 계획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러한 계획에 의한 투자와 공동체 에너지 기획에 의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동체 에너지 기획을 설립하고 작동시키거나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에게(공적 기구이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건)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해야 한다(제19조 제2항).

또한 '기후변화법'은 지방행정기구들(parish council or community council)로 하여금 자가 열·전력 생산, 자가 열·전력 생산 방법에 의해 생산된 열과 전기의 사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사용되는

\*\*\* -----

5) 여기서 '동력수요기술'이란,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에 의한 어떤 특정 시간의 전기의 소비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자가 발전 시스템에 의한 어떤 특정 시간의 전기 생산을, 엇갈리는 전류의 빈도를 참조하여, 자동으로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기술을 말한다(제18조 제4항).



에너지 총량의 감축, 바이오매스(biomass)나 여기에 서 나오는 연료의 생산과 사용 등을 증진시키고 장려하도록 하고 있다.

### 9. 재생 가능한 열

정부는 재생 가능한 자원(renewable resources)으로 부터 생산되는 열의 사용을 증진시키는데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21조 제1 항). 그러한 조치들에는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의 연료를 쓰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 설비를 고쳐서 재 생 가능한 자원을 쓰도록 하는 것, 부분적으로만 재 생가능한 자원에서 나오는 열을 생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제21조 제3항).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법' (Sustainable Energy Act 2003) 제1조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목표의 진행 사항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데, 여기에 '기후변화법'의 공동체 에너지 기획의 목적에 관한 것과 제21조의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의 열 생산에 관한 것을 포함하도록 한다(제22조).

### 10. 기타

그 외에도 제23조와 제24조는 그린 먼허(Green Certificate)에 대하여, 제25조는 송전의 조절을 규율 하고 있다.

## III. 기후변화 관련 후속 법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에 대한 법이다. 영국에서는 이 법에 의해 온실가스 방출의 감축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후속 법안이 준비 중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 운 기후변화법 초안(Draft Climate Change Bill)이다. 이 법안은 2005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6년 11월 15일자로 노동당 정부가 이 법안의 도입을 발 표하였으며, 2007년 3월 13일에 법안 초안이 발표되 었다. 이 법안은 EU 정상들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20~30%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에 영향을 받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영국은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는 26~32%, 2050년까지는 60%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 법안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규 정한 세계 최초의 입법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 법안에는 국가탄소예산의 설정, 정부의 진행사항 보 고, 기후변화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홍 성 수

(영국 주재 해외법제조사원)